

접견신청서

피조사자 리은경, 한행복, 리선미, 리지혜, 리춘, 금혜성, 류송영, 전옥향, 지정화, 박옥성, 금설경, 서경아에 대한 접견을 신청합니다.

피조사자 : 리은경 외 11명

접견일시 : 2016. 5. 16. 14:00

접견장소 :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

※ 2016. 5. 16. 오전까지 위 접견장소 또는 그 외 지정장소로 접견장소를 정하여 아래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상록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2, 4층(서초동, 영생빌딩)

전화 : 02-3482-3348, 팩스 : 02-3482-4477

첨 부 : 북한이탈주민 피구금자에 대한 외부 변호인 등의 접견·면담·상담의 당위성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외부 변호인 접견 및 조사 중 변호인 참여 보장의 필요성

2016. 5. 13.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천낙봉 인

담당변호사 장경옥 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권정호 인

담당변호사 오민애 인

법무법인 동서양재 강남분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자연 인

변호사 신윤경 인

변호사 설창일 인

변호사 채희준 인

국 가 정 보 원 장 귀 중



북한이탈주민 피구금자에 대한 외부 변호인 등의
접견·면담·상담의 당위성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외부 변호인 접견 및 조사 중
변호인 참여 보장의 필요성

1. 2015년 11월 5일 유엔자유권위원회의 북한이탈주민의 구금에 대한 권고 사항

탈북민 구금시설에 대해서는 2015년 11월 15일 유엔자유권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권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구금

36. 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도착한 즉시 “북한이탈주민보호 센터”에 구금되며, 해당 센터에 6개월까지 수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피구금자들이 인권보호관에 접근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이 제공한 정보에 주목하면서도, 본 위원회는 피구금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이 보호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 독립적인 심의 없이 제3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보고에 대하여 더욱 우려하는 바이다.

37.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가능한 최단 기간만 구금되고, 피구금자들에게 구금기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고, 조사 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이 가능해야 하고, 조사 기간 및 방법 역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법무법인 상록

06606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2, 4층(서초동, 영생빌딩)
전화:(02) 3482-3348 팩스:(02) 3482-4477 E-mail : j5084@hanmail.net

정부는 또한 개인이 제3국으로 추방되기 전에 충분히 독립적인 적절한 메커니즘에 의해 집행지시 효과를 가지는 심의를 허용하는 명백하고 투명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2.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위헌성

합동신문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라고 합니다) 및 그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재외공관장 등에게 보호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정원장이 ‘임시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은 ‘임시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보호신청 이후 보호신청자에 대한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와 보호여부 결정 등을 위한 필요한 조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기간을 보호신청자가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정하고, 그 ‘내용·방법’과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정합니다(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3항).¹⁾ 이와 같은 법제는 전형적으로 조사권한만 창설한 것인지 피조사자를 위한 인권보호장치는 완전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탈북민에 대하여 특별히 광범위한 침해를 내포하는 수사권한을 창설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본질적으로 헌법상의 제 인권, 절차적 권리를 총체적으로 부정합니다. 이렇게 무방비상태의 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정치적 안보, 국면전환을 위해 필요한 간첩사건을 합동신문센터가 조성한 사례들이 등장합니다.

헌법이 효력을 가진다는 말은 헌법상의 기본권이 입법 사법 행정을 구속하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서 인권침해실태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405쪽 이하.

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합동신문센터에서의 탈북민은 헌법상의 보호를 박탈당한 금지된 존재(homo sacer), 법의 바깥에 있는 자입니다. 탈북민이 간첩의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법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 및 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헌법에서 논의하는 형사절차상의 제 권리는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에게 인정되는 인권이므로 탈북주민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조사 및 수사과정에서 제 권리를 부정하고 그들을 언제든지 법외존재로 추락시킬 수 있는 권한을 정보기관에 부여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을 유린한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최소한 인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지원하는 것이어야지 국가안보의 시각에 매몰되어 인간을 인간 이하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3. 국제적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 피구금자에 대한 외부 변호인 등의 접견·면담·상담의 당위성

유엔 자의적 구금에 대한 실무그룹은 망명신청자나 이주자에 대하여 기본적인 권리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²⁾ 망명신청자나 이민자는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도 외부세계와 전화, 팩스, 이메일로 통신할 수 있어야 하고, 변호사와 영사관계자들과 접촉할 수 있어야 합니다.(원칙 2). 구금된 망명신청자는 즉시 사법당국 앞에 즉각적으로 출두해야 합니다(원칙 3). 구금센터에 수용된 경우에 내부규칙에 대하여 고지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그러한 구금장소에 대해서는 유엔난민기구(UNHCR), 국제적십자자(ICRC), 적절한 권한을 가진 NGO에게 구금장소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합니다(원칙 10).

또한 유엔 자의적 구금에 대한 실무그룹은 최근에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구제 및 절차에 대한 유엔 기본원칙과 지침>³⁾

2)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of 28 December 1999, Deliberation No. 5 concerning the situation regarding immigrants and asylum-seekers, E/CN.4/2000/4.

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기본원칙도 모든 유형의 억류 구금에 대한 주요한 인권기준을 조문화하였습니다.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구금 장소에 독립적인 국제기구(유엔난민기구한국대표부), 국가기구(국가인권위원회), 민간기구가 접근하여 망명신청자들 접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을 한국인인 것처럼 취급하면서 망명절차를 배제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정보기구의 자의적 조치의 객체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망명신청자의 차별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의 난민법 제12조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억류 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⁴⁾은 “재판의 결과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제외하고 인신의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을 억류(구금)된 자(Detained person)로 규정하였다. 합동신문센터에 묶인 북한이탈주민은 바로 억류(구금)된 자에 해당하므로 이 보호원칙이 제시하는 인권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일반망명신청자와 달리 북한이탈주민을 국정원의 보호조치 아래 방치하는 것은 원칙5가 규정한 차별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⁵⁾

북한이탈주민 피구금자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즉각 보장하여야 합니다.

- 3)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UN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Remedies and Procedures on the Right of Anyone Deprived of Their Liberty to Bring Proceedings Before a Court(A/HRC/30/37), 6 July 2015.
- 4)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A/RES/43/173 보호원칙의 번역은 <http://sarangbang.or.kr/bbs/view.php?board=data&id=26&page=4>
- 5) 원칙5 ① 이 원칙은 국내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혹은 종교적 신조,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 지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법 무 법 인 상 록

06606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2, 4층(서초동, 영생빌딩)
전화:(02) 3482-3348 팩스:(02) 3482-4477 E-mail : j5084@hanmail.net

가. 피구금자의 권리 및 권리행사의 방법을 고지받을 권리

구금된 자는 누구든지 사법기관 등에 의해 즉시 청문받을 실질적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구금된 자는 스스로 방어하거나 법에 정해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구금된 자(만일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는 구금명령 및 그 이유에 대해 즉시 그 모든 내용의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법기관 등은 구금의 계속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보호원칙 11). 현행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의 적용은 이러한 권리를 총체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고지받을 권리의 진정한 의미는 권리를 고지받고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누구나 체포 및 억류, 구금의 개시시 혹은 그 후 즉시 체포·억류·구금을 집행하는 당국으로부터 체포·억류·구금에 관한 피구금자의 권리 및 권리행사의 방법을 고지받을 수 있어야 해야 합니다(원칙 13). 체포·억류·구금을 집행하는 당국이 사용하는 언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할 수 없는 사람은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다양한 정보를 즉시 고지받을 권리를 갖고 체포에 이어지는 법률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하다면 무료로 통역을 받는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보호원칙 14). 탈북민에게 통역을 받을 권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한글을 사용하여 소통할 수 있다는 것과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권리를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장 유리한 형태의 소통매개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한국의 사법체계와 인권은 낯선 외국어에 불과하므로 고지받을 권리는 합동신문센터의 내부규정이나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피구금자의 권리 및 권리행사의 방법을 고지받아야 하고, 이것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인 국정원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상 록

06606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2, 4층(서초동, 영생빌딩)
전화:(02) 3482-3348 팩스:(02) 3482-4477 E-mail : j5084@hanmail.net

나. 변호인의 접견권, 조력을 받을 권리

구금된 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구금 즉시 그 권리를 고지받고 권리 행사를 위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도록 해야 합니다. 구금된 자가 사법의 이익이 있으면서도 자력이 없어 자기가 선임하는 변호사를 갖지 아니하는 모든 경우에는 무료로 사법기관 등에 의하여 변호사의 선임을 받을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보호원칙 17).

변호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변호인과 접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러한 권리는 무의미합니다. 보호원칙 18은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 ①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자기의 변호사와 상담하기 위해 적당한 시간과 시설이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 ②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자기의 변호사와 통신하고 상담하기 위해 적당한 시간과 시설이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 ③ 억류 또는 구금된 자가 지체없이, 검열이 없고 완전한 비밀이 보장되어 자기의 변호사의 방문을 받고, 변호사와 상담 또는 통신할 권리는 정지되거나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규칙에 정해지고 사법기관 등에 의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결하다고 판단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억류 또는 구금된 자와 그 변호사의 접견은 법집행관이 감시할 수 있지만 청취할 수는 없도록 해야 한다.
- ⑤ 이 원칙에 의한 억류 또는 구금된 자와 그 변호사의 통신은 억류 또는 구금된 자의 증거로서는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 그것이 계속적 혹은 의도적 범죄와 관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로서는 광범위하게 변호인의 접견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합동신문센터의 실상입니다.

다. 외부세계와의 통신 및 접견권

어떠한 예외적인 경우라도 억류 또는 구금된 자와 외부(특히 가족과 변호

법무법인 상록

06606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2, 4층(서초동, 영생빌딩)
전화:(02) 3482-3348 팩스:(02) 3482-4477 E-mail : j5084@hanmail.net

사)와의 교통은 수일간 이상 거부되어서는 안 됩니다.(보호원칙 15). 체포 후 즉시 그리고 체포·억류·구금의 장소에서 이송이 있을 때마다 억류·구금된 자는 가족 혹은 그가 선택하는 기타의 적절한 사람에게 체포·억류·구금 사실, 이송 사실 및 현재 구금되어 있는 장소를 통지하거나 관계당국에 대하여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보호원칙 16①). 억류 또는 구금된 자가 소년 또는 자기의 권리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관계기관은 직권으로 이 원칙에서 주어지는 통지를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통지를 하는 것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합니다(보호원칙 16③). 통지는 즉시해야 하며, 관계기관은 수사를 위하여 예외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지체가 용인됩니다(보호원칙 16④).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특히 가족의 방문을 받고 가족과 통신할 권리를 가지며, 외부사회와 교통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단,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규칙에 의하여 정해진 합리적인 조건과 제한에 따른다(보호원칙 19).

이상과 같이 <보호원칙>은 특별한 인권기준이라기보다는 우리헌법상 이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조항으로부터 포괄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기준들이므로 북한이탈주민 피구금자에 대한 외부 변호인 등의 접견·면담·상담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4.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외부 변호인 접견 및 조사 중 변호인 참여 보장의 필요성

4.13 총선 전 정부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인 집단탈북 및 입국 발표 이

법무법인 상록

06606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2, 4층(서초동, 영생빌딩)
전화:(02) 3482-3348 팩스:(02) 3482-4477 E-mail : j5084@hanmail.net

후 북 해외식당 종업원의 전격적 입국경위 및 자발적 탈북인지 여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발적 탈북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남북 당국자들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고, 집단 입국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가족들은 CNN 인터뷰 등을 통하여 그들의 송환과 판문점 등에서 가족의 대면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자발적 탈북으로 국가정보원의 관여에 의한 기획탈북이 아니라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또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부모들은 그 명의로 유엔인권사무최고대표와 유엔인권이사회를 상대로 딸들이 조속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움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으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에 대한 자발적 탈북 여부는 국제적 이슈가 되었고 유엔 차원에서 검증이 필요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국제사회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자발적 탈북 여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투명한 공개적 검증 차원에서라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하여는 국제법과 우리헌법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할 북한이탈주민 피구금자에 대한 외부 변호인 등의 접견·면담·상담을 즉각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현재도 계속 이들에 대한 조사 중에 있다고 한다면 조사 중 변호인 참여 보장도 이들의 권리보장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자발적 탈북 의사에 대한 투명한 의혹 해소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북한이탈주민 피구금자에 대한 외부 변호인 접견의 당위성 및

법무법인 상록

06606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2, 4층(서초동, 영생빌딩)
전화:(02) 3482-3348 팩스:(02) 3482-4477 E-mail : j5084@hanmail.net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외부 변호인 접견 및 조사 중 변호인 참여 보장의 필요성에 비추어 아무쪼록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에 대하여 2016년 5월 16일 오후 2시 합동신문센터(또는 국가정보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접견 및 변호인 선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한 후에는 계속 조사 중이라면 향후 변호인으로 조사 중 참여를 하고자 하오니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기를 양망하는 바입니다.

2016. 5. 13.

리은경 외 11명에 대한 접견신청 변호사 일동

법무법인 상록

06606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2, 4층(서초동, 영생빌딩)
전화:(02) 3482-3348 팩스:(02) 3482-4477 E-mail : j5084@hanmail.net